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08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김소희·서명옥·서지영

성일종 · 최은석 · 김선교

우재준 • 박덕흠 • 곽규택

주호영 · 한지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면서,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을 실내공간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오염물질'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등 취약계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내공간에 떠다니지 아니하고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벽면, 천장 등에 있는 오염물질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오염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등 '오염물질'의 정의를 확

대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 조제3호). 법률 제 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떠다니는 입자상물질"을 "바이러스 및 입자상물질"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	3		
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바이러스 및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